

2017. 4. 27.(목)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질문서**  
**[서면질문]**

< 추가 질문 : 1의원 1건 >

○ 김진희 의원 : 1건

# 안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서

## 1. 김진희 의원 보충 질문

○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토지 매각 및 학교용지 공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 가. 안산시가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점과 정부법무공단 등의 자문 결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문제가 또 다시 야기될 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 나. 갑자기 학교용지를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예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 다. “2017년 7월까지 법제처 등에서 학교용지 유·무상 공급 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시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2020년 3월 학교 개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법제처 등이 라고 말한 기관은 어디이며 법제처의 중재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와 같은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학교에 대한 내용이 오로지 학부모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2017. 4. 27.(목)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서**  
**[서면답변]**

< 추가 질문 : 1의원 1건 >

○ 김진희 의원 : 1건



**안산시**

- 김진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 토지 매각 및 학교용지 공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안산시가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점과 정부법무공단 등의 자문 결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문제가 또 다시 야기될 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 갑자기 학교용지를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예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 “2017년 7월까지 법제처 등에서 학교용지 유·무상 공급 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시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2020년 3월 학교 개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법제처 등이라고 말한 기관은 어디이며 법제처의 중재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와 같은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학교에 대한 내용이 오로지 학부모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 첫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문제가 또 다시 야기될 시 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는 공익시설로 안산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학교 용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였으며,
- 안산시의 공익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정부로부터 정부법무공단에서도 법적인 취지에 부합된다는 자문의뢰를 받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학교용지 유·무상 공급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교육청이 진행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 개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와 교육청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친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해 예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6년 1월 실시협약 체결 전 안산시, GS건설컨소시엄, 교육청 삼자간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무상공급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안산시가 무상으로 공급 하여야 한다고 요청한 시기는 2016년 6월 2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후인 2016년 8월 2일이며, 교육부가 안산시를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로 유권 해석하면서 학교부지 무상공급이 타당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실시협약 체결 전 사전 협의시에도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2016년 1월 실시협약 체결 및 2016년 6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법제처 등이라고 말한 기관은 어디이며 법제처의 중재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와 같은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행정의 책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제처 등이라고 말한 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의 유·무상 공급이 결정되면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 양 기관의 협의한 내용이며,
-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발생 시 법제처 해석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 2020년 3월 입주 시기에 맞춰 초등학교를 개설하여 학생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며, 학교가 신설되면 학부모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확보 및 행정사항 등으로 개교가 지연될 경우 교육청과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학버스 운행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